

被拉致人士에 韓社會議

1954.9.9

一 日時 檀紀四二八年七月二日 自一〇時三十分  
一 場所 外務部情報局長室 至十一時十分

二 司會 李壽榮局長

討議內容

1 西端壽府에 同國赤十字社外務國六二五  
當時北韓傀儡에 依하여 拉致된 人土送還  
에 韓朴 屢次論議 한마디 이 其時被拉  
致人土名簿第一、二冊(家族會編纂) 는 一  
部數字 이라고 指摘 하여 赤十字交換 하되 已  
同朱十字社 는 이 에 對北韓傀儡政權  
正의 抗衝交涉에 全幅的 이 努力 是不

— 外務部 —

特此再次確約한바 있으以致

2 그려 同名簿에 는 二二五名(第一冊) 一七九  
一名(第二冊) 計四六〇人 으로 되어 이 는  
우리가 從來主張하여 는 八二五九五名 과 는  
이나 相差甚遠 아니 外約束에 立同名簿  
第三冊以半 을 繼續送付 치 않 을 수 있음 이  
○ ⑨具體的方案을 講究고 하는가 있음  
3 同名簿의 再整理即人名數完全把握 之為  
하여는 次年十月二十二日當時國會內에 設置  
되었으나 拉致民間人送還 對策委員會主席  
崔被拉致民間人送還 對策委員會各部  
處連席會議最終決議豆內務部에

一任하여 調査 整理 하였던 바 今日에 이

르기까지 이에 對한 結果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이로써 삼국시대 이를 國務會議의 上程通  
過가 할 수 없어 本會 會長名儀 三直捲內  
務部에 委嘱함이 可하니思料되

當時國會會議에 之 内務部側 代表 申  
庸兩地方局長代理 및 指導課長(姓名不  
詳)이 參席하였으리

4 調査에當하여는 内務部管下未端行政機  
構を通하여 被拉致人等為한 調査의  
危表面에내 놓고 以는 方式即 戶主不在

家族中行方不明者 및 其理由等을 주로 한

### 外務部

形式의 調査는 實施되거나

5 調査書樣式는 嘗研究會에 付指定하여

준다

6 調査完結時에 之 調査書는 七合 三該當  
者만은 技奉하되 家族會에 一任한다

被立敵人問題關係部處  
代表處會議會議錄

外務部

一、目的

被拉致人被出方案討議及正確起名簿

朱成牛件

二時日

民紀四十八年七月二十四日下午一時半

三場所

459.1.2.

外務部長官室

四參加範圍

民議院

國防委員長

(不參)

內務部

指導課長

李洛純

治安局特殊情報課第一係長外二名

外務部

情報局長

李壽榮

0099  
1607A

第一課長

崔雲祥

1698

5

國防部

軍事機密室長 李寬植大領

社會部

枚護課書記官 獨孤莫

公報處

統計局長 草長清

大韓赤十字社 底務部長

李易烈

被拉致人家族會副會長

鄭福熙

書記

金和淑

伏戰對策研究會國防部側幹事一名

五、會議內容

司會會要旨 (李壽同某情報局長)

山西瑞壽府會談會期中被拉致人送還은  
為赴國際赤十字社外의交涉經緯紹介

外務部

(2) 公報處統計局發行 “文三五事” 中被害  
者名簿 “中釋放民間人 (義勇軍) 및 軍人、  
警察官等之被拉致民間人으로包含시킬 수  
있음에 비추어 此此赴被害者까지包含되고  
있는 8~2595명의數字를 그대로 國際赤  
十字社에 주는수도 없었음. (다카사히 츠리) 2  
리고 政府에 貢任하고 提出할 수 있는 名簿

2. 次次外計부 목록

外務部 (政務局第一課長)

1. 保管中의 公報處統計局作製名簿紹介  
2. 大韓赤十字社에 對한 國際赤十字社 외의 提携

要請

3) 會議出席者相互人事紹介

(4) 休戰協定第十九項에 依한双方所謂失鄉私民交換에對한經緯說明

(5) 同五十九項에對한我方의履行과 敵側의 外國籍私民送還以外斗尚令軍一名의同胞의送還

도 이는 實施치 않고 있음에對한說明

(6) 國際赤十字社及外務部長官門의被拉致人士에 以한公翰往來結果 國際赤十字社韓國調查委員团의 入國이期待되는點  
7. 軍事停戰委員會、失鄉私民歸鄉協助委員會及 國際赤十字社에 以한拉致人士正確此名簿을 要求하고 있는事實

### 公報處(統計局長)

報告

二、三軍麥被害者名簿編纂動機와 經過

1) 北韓傀儡保衛部 内務署 民青員에 依  
朴亞拉致死人等에 對하여는 다만 民族的見  
地에서 單警民을 莫論하고 이를 紧  
急히 調查登錄케 함으로서 豊產黨의  
罪惡相은 世界에 公佈하려고 한것이 고 被拉  
致民間人로 送還을 要求하여 係製  
此名簿을 要求하고 있는事實

2) 人名重複의 理由는 單一家族들이 各地에  
疎開되었던關係로 甲乙兩地區에서 各已

一外務部

调査에應한였기 때문이요

3) 今番의 新名簿作成은 内務部가 末端行政組織體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全的으로 善하여야 하는것임

### 内務部 (指道課課長)

既為公報處에 依하여 名簿가 編纂되었으나 被拉致人土를 為한 名簿가 未成되어 公報處에 1社하고 内務部는 이에 協助함이 亟要하다고 誓辭하니

### 國防部

公報處에 1社하고 國防部는 事務의 1協助 3人을 証言

### 社會部

公報處에 1社하고 同様

### 被拉致人土家族會 (國會長)

公報處의 努力에 感謝함

지금자 내務、社會部의 全幅의 協助

없이 100% 適應이 100% 覺得함

公報處에 1社履行社名簿에 行方不明者 또는 其他 100% 認定되어 被拉致人土는 100% 認定되어 100% 事務이니 이것을 敵側에게 正式히 100% 告知하지 않으면 이므로 名簿보다는 數字가 頗爾인것임

내務部는 每年 10월 11일 國會는 每年 10월

의會議斗目的으로는 이는 이는 연席會議이니 内務部에一代하야 再調查作成카로 하자는決議를履行하고 있지 않은 뿐 아니라 其間 内務部次官이므로 同名簿는作成되었을것이라는 模糊한 答辭에 그는 반기 못한경。今者名簿는 再作成하여는 必不可 内務部가 이고는 相當한가 으로 延期하였다。

### 内務部

去年國會連席會議決議件은當時同會議 内務部代表者가 그의 報告書後指未되어 한자이라는 質을 주파도 있다 고 하여 具報告書類의 1. 次官이捺印

### 外務部

이 있으나保留되어온것은事實이다  
오늘의會議가客年의 그들과 같이 이자리에서 内務部가 이를 担當한다고 端的으로決定지는 수는 없는것으로 봄

### 外務部(情報局)

本連席會議에서 名簿작성은 内務部가 担當하게 되는 希望하고 있는것으로 看做되는데 萬若 内務部가 担當하는 情況은 스며들며 連席會議에서 有가 많고 각 이 誓言과 同內務部側 代表는 今日의會議結果是 報告書後決裁與否는 外務

### 外務部(情報局)

내務部에서 担當하게 되면 外務部는 算獲得에 있어 協助할 것임

大韓赤十字社

내務部에서 一括 担當함이 安當하고 息料되

外務部 (第一課長 金雲祥)

一旦本件이 可決되며 之다고 假定하고 之  
算 및 實踐方法等을 討議하므로 次期會議にて 簡易케 할 수 있는 것이라

고봉

家族會

내務部는 다음 회합의時期를 정한 것

内務部

外務部

七月二十六日(月)中으로 二司決裁與否는  
電話로 通報할 것이며 本部에서 担當  
하게 되면 이에 따르는 之 算 및 施行案  
은 之 案件にて 提出審議 키로 하겠음  
結論 및 그의 對策

失鄉私民에 關한 名簿작成은 内務部에서  
一括 取扱 남과 名簿작성이 必要한 之 算 및  
施行案작성에는 休戰對蒙研究會에서 協  
助함이妥當하다고 思되며 그려므로 短時日  
내에 正確한 名簿를 作成하기 为한 措置를  
關係部處長官께서 管下職員 및 所屬機

閣에  
기  
緊急下命有  
하  
를  
以  
茲  
建議書

10

1613

0105

外務部

2010